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(주)
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정 2016 년 3 월 25 일

개정 2021 년 3 월 29 일

개정 2026 년 5 월 7 일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'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'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독립이사의 후보추천권을 가진다. (2026.05.07 개정)

②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363조의 2 제 1 항, 제 542 조의 6 제 1 항, 제 2 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 일의 6 주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독립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⑤ 독립이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. (2021.3.29 신설) (2026.05.07 개정)

제 5 조 (위원장)

① 위원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독립이사인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(또는 통괄)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독립이사인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, 그 순위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일자 순으로 하며,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소집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및 회의장소를 정하고, 늦어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(2021.3.29 개정)

제 7 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8 조 (역할)

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독립이사 후보 추천 기준의 수립·점검·보완 (2026.05.07 개정)
2. 주주총회가 선임할 독립이사후보 추천 (2026.05.07 개정)
3. 상시적인 독립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검증 (2026.05.07 개정)

제 8 조의 2(독립이사후보의 추천) (2026.05.07 개정)

① 위원회는 회사의 독립이사 또는 독립이사였던 자를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경우 독립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결과(업무수행능력의 우수성 포함)를 고려하여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② 독립이사 후보군 발굴 시 주주,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③ 위원회가 독립이사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임시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의견을 후보추천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④ 위원회는 독립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⑤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, 본인을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(2026.05.07 개정)

제 9 조 (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)

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

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1 조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2 조 (독립이사후보추천 내역의 공시) (2026.05.07 개정)

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(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,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.)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,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. (2026.05.07 개정)

1. 독립이사 후보자의 당사(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),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(2026.05.07 개정)
2.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
3. 독립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(2026.05.07 개정)
4. 독립이사 후보의 경력 (2026.05.07 개정)
5. 후보자와 회사와의 최근 3 년간의 거래내역
6. 그 밖에 독립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(2026.05.07 개정)

제 4 장 보 칙

제 13 조 (사무)

위원회의 사무는 이사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.

제 14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 년 5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8조, 제8조의2, 제12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